

- 2022년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공모안내서

▣ 유의사항

1. 공모기간

- 구매 2.14(월) ~ 3.28(월)
- 가공(일반) 2.14(월) ~ 3.29(화)
- 가공(AI) 2.14(월) ~ 3.30(수)

☞ 데이터 구매/가공(일반)/가공(AI) 부문별 접수 마감일이 상이하니, 접수 마감일 혼동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는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2.22(화)부터 가능

※ 신청 접수 준비를 위한 PMS 회원가입, 수행계획서 등 관련 양식 다운로드, 과제 협의 등은 2.14(월)부터 가능

2.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자 집중으로 인해 접수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마감 3~4일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시길 권장합니다.

202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목 차

I.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1
1. 추진 배경	1
2. 사업 내용	1
3. 추진 체계	2
4. 추진 방법	3
II. 공모 안내	6
1. 지원 내용	6
2. 지원 규모 및 대상	8
3. 지원 요건	10
4. 추진 절차	14
5. 제출 서류	15
III. 선정 방안	17
1. 평가체계 및 절차	17
2. 선정심사 방법 및 심사기준	18
3. 매칭심사 방법 및 심사기준	19
IV. 신청 방법	21
1. 신청·접수 안내	21
2. 문의처 및 관련 홈페이지	22
V. 기타 (필독사항)	23
1. 신청조건 및 일반사항	23
2. 평가제외 및 매칭제한	24
3. 사업관리 및 점검	25
4. 부정수급 대응	26
5. 개인정보 보호	27

I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1. 추진 배경

◆ 전 산업, 전 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확산 및 디지털 경제성장 견인

- 데이터의 안전하고 가치있는 활용으로 新산업 분야 성장 및 기존 전통 산업의 융합·혁신 가속화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토대 마련 필요
 -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을 통해 데이터 수요·공급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 기반 데이터 활용 활성화 촉진
- ※ '21년 2,580건 지원(1,230억원) → '22년 2,680건 지원(1,241억원)

2. 사업 내용

- (개 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 및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게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 지원
- (사업명) 2022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6개월)
- (지원규모) 총 사업예산 1,241억원, 2,680건 바우처 지원
 - (지원부문) 구매 1,200건(최대 16백만원), 일반가공 480건(최대 45백만원), AI가공 1,000건(최대 70백만원)
- (공모부문) 일반 부문 및 사회현안 해결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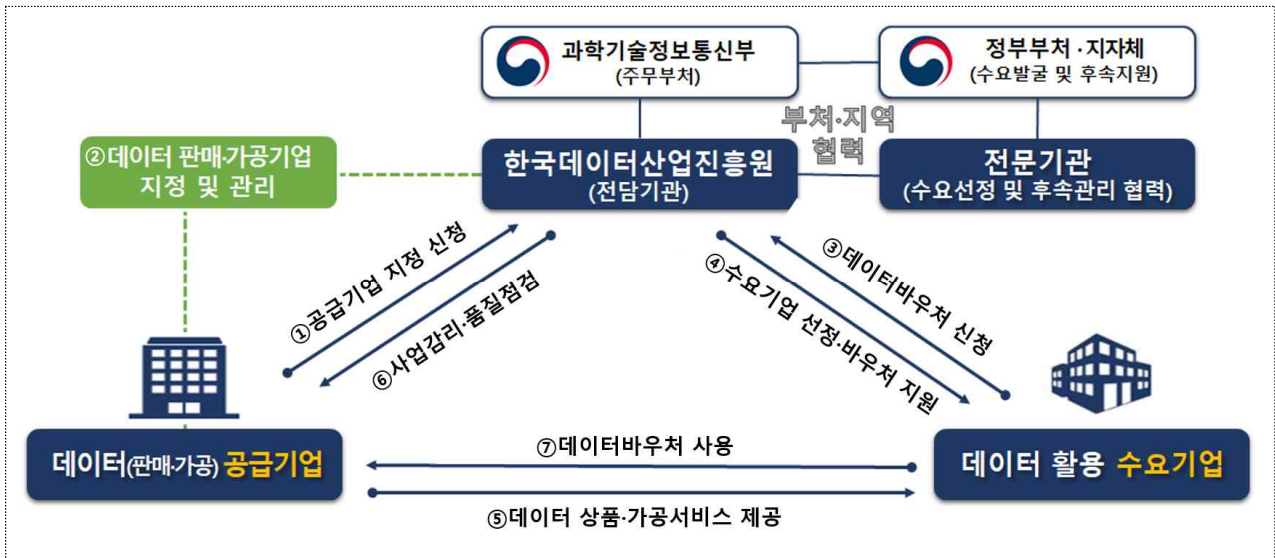
< '22년 데이터바우처 부문별 지원대상 >

공모부문	일반부문	사회현안해결부문
지원대상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청년기업 포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 일반부문 지원대상도 신청 가능)

※ 지원 방법 등 상세내용은 공모 안내, 선정 방안, 신청 방법, 기타 공모 내용 확인

3. 추진 체계

< '22년 데이터바우처 지원 추진체계 >



< 추진체계별 주요 역할 >

구분	주요 역할
과기정통부 (주무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이행·관리 및 사업 주관 ▶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 구축·운영 ▶ 공급기업 모집·지정·관리 ▶ 데이터 활용 수요기업 공모·선정 및 지원 ▶ 우수성과사례 창출·확산
관계부처 산하·유관기관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분야 평가위원 풀 공유 등 선정심사 참여 ▶ 수요기업 분야 전문성 검토 ▶ 수요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공동 수요 발굴, 사업설명회 협력 ▶ 지역별 수요기업 성과확산 협력
수요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 데이터 상품을 지원받아 데이터 분석, AI개발 ▶ (가공) 맞춤형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지원받아 데이터 분석, AI개발
공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수요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상품 판매 및 활용지원 ▶ (가공) 수요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가공서비스 제공

4. 추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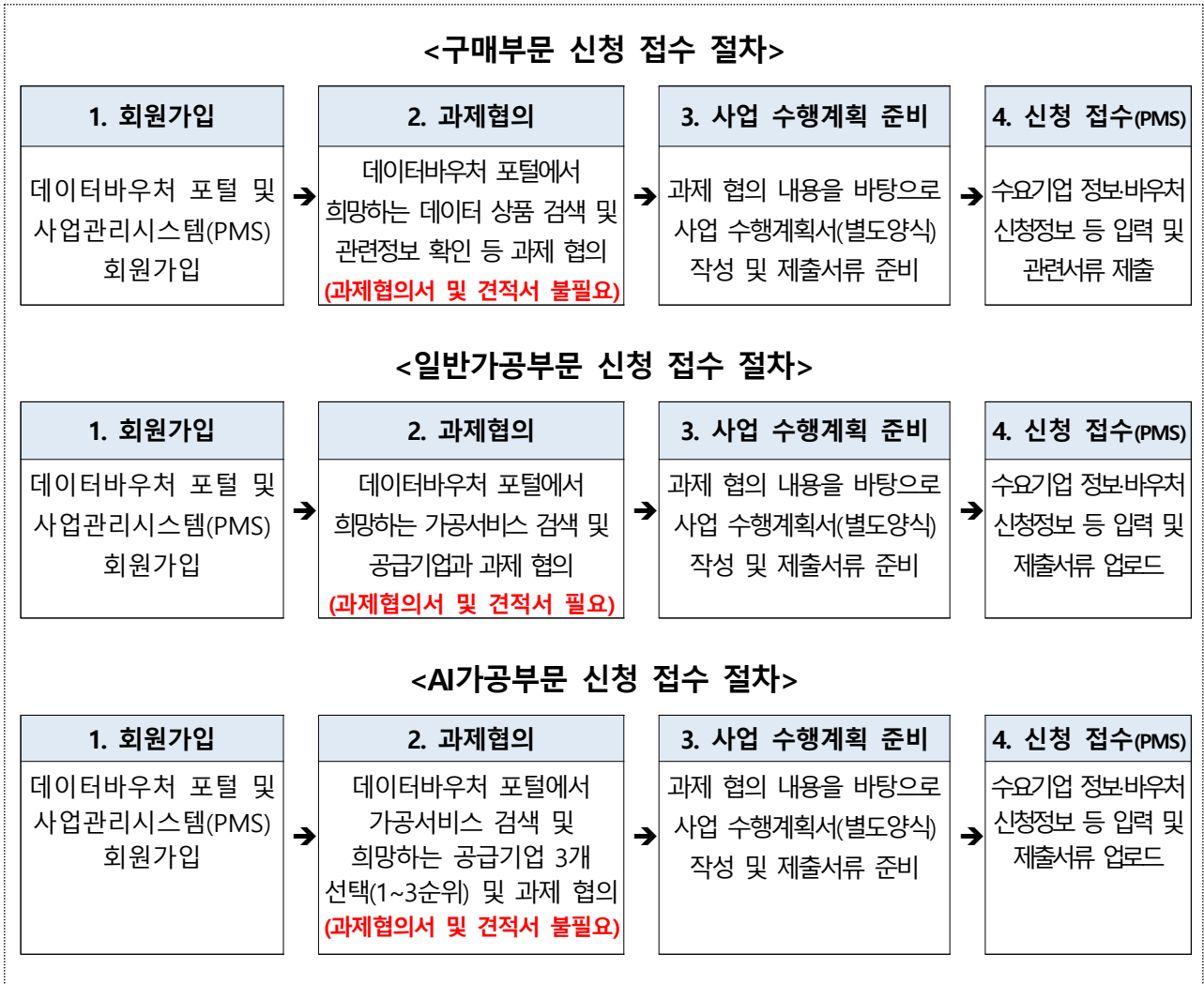
▣ 기본 개념

-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은 희망하는 데이터 상품 및 가공 서비스를 지정된 공급기업과 과제 협의를 통해 사업수행계획 준비 및 신청 접수 필요
- **과제 협의:**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이 협의를 통해 사업수행계획을 준비하거나, 과제 협의서 및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에 대한 견적서를 도출하는 행위
-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구매/일반가공/AI가공 지원부문별 **과제 협의**를 통해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제출 필요

지원부문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제출 시점		비고
	신청 접수 시	선정 심사 후	
구매	X	O	선정된 수요기업에 한하여 과제 협의 완료 후 협약 체결
일반가공	O	X	선정심사 완료 후 협약 체결
(구매 혼합 시)	O (과제협의서 및 구매상품 견적서 제출)	X	
AI가공	X	O	선정된 수요기업에 한하여 과제협의 완료 및 매칭심사 완료 후 협약 체결
(구매 혼합 시)	O (과제협의서 및 구매상품 견적서 제출)	O (과제협의서 및 가공서비스 견적서 제출)	

- **과제협의서:**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에 대해 **수요기업의 요구사항과 공급기업이 제공 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수요-공급기업 **상호 합의 및 서명한 협의서**(별도양식)
- **견적서:** 과제 협의 시 데이터 상품 및 가공서비스에 대한 견적은 PMS를 통해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기업은 PMS에 견적사항 입력 및 전자 문서 형태로 발행**(PMS를 통해 요청·발행되지 않은 견적서는 인정 불가)
- * 수요기업으로부터 견적을 요청받은 공급기업은 요청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 발행 필수
- ▶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는 지원부문별 제출 시점에 따라 수요기업이 PMS를 통해 공급기업에게 요청하는 서류이며, **요청을 받은 공급기업은 수요기업과 협의를 통해 최종본을 PMS에 직접 업로드**해야 함
- ▶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과제 협의 시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은 공급기업 및 데이터 상품·가공서비스만 가능(데이터바우처 포털을 통해 상세내용 확인 가능)

- ①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접수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은 데이터 바우처 포털(www.kdata.or.kr/datavoucher)에 접속하여 필요한 데이터 상품·가공서비스 및 공급기업명을 검색
- ② 공급기업과 과제협의 및 공모안내에 따라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 시스템(www.kdata.or.kr/pms)을 통해 접수



- ③ 수요기업 기본 요건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격성 검토 및 분야별 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 진행
- ④ 선정된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은 지원부문별 필요한 후속조치(과제 협의서 제출, 매칭심사 등) 후 수요-공급기업-전담기관 간 다자 협약 체결
- 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 제공

- ⑥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혁신 및 新서비스·제품 창출 등 사업 수행
- ⑦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사업추진 및 데이터 활용 현황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 공급기업의 데이터 이관, 감리, 기업별 품질점검 시행
- ⑧ 전담기관은 사업 성과관리를 통해 우수한 수요·공급기업을 선정하고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우수 사례 확산 등을 통한 후속 지원 예정

< '22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세부 추진 절차 및 일정 >

일정	추진내용
'22.2.14~3.30 (부문별 마감일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K-DATA 홈페이지, 데이터바우처 포털 등('22.2.14~3.30) ▸ (협의) 데이터바우처 포털(www.kdata.or.kr/datavoucher) ▸ (접수)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www.kdata.or.kr/pms) ▸ (접수기간) 구매(2.22~3.28)/ 일반가공(2.22~3.29)/ SI가공(2.22~3.30)
▼	
'22.4.16~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성검토)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한 수요기업의 필수 제출서류 및 기본 요건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 (선정심사) 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수요기업 사업의 적합성·구체성·혁신성 등 평가 ▸ (매칭심사) 수요에 적합한 가공서비스 제공 가능성 및 요구사항의 부합성, 공급거래의 적정성 등 평가(SI가공부문에 한함) ▸ (평가결과 공고·협약) 수요기업·공급기업·K-DATA 간 다자협약 체결
▼	
'22.6.1~11.30 (협약 후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협약 체결 후 6개월 간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의 제공(공급기업) 및 데이터의 사업 적용(수요기업) 수행 ▸ (컨설팅) 수요기업 데이터 기술·비즈니스 컨설팅 지원(별도 공모 예정)
▼	
'22.7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기업 점검) 이관데이터 감리 및 기업별 품질점검 ▸ (수요기업 점검) 현장 이행 점검 및 민간부담금 점검
▼	
'22.11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평가) 수요기업 대상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과평가
▼	
'22.12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 수요기업 데이터 활용 기반 성과평가 및 우수기업 발굴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1. 지원 내용

- 데이터·AI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 및 新서비스·제품 창출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 지원

공모부문	지원부문		지원내용
일반/ 사회현안 해결	데이터 구매		마케팅 전략 수립, 비즈니스 모델 개발, 창의·도전적인 아이디어 사업화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비용 지원
	데이터 가공	일반	서비스 개발, 고도화, 데이터 분석 등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가공서비스 비용 지원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 개발,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가공서비스 비용 지원

- ※ 기후변화·질병(감염병, 난치병) 관련 사회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혁신, 정책·학술 연구 등을 위한 데이터 구매 및 가공서비스 지원(50억원 內)
- ※ 본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수해야함(V. 기타 (필독사항)의 개인정보보호 참조)

▣ (참고) 데이터 가공업무 유형

업무 유형	내용(예시)
전처리	· 서비스 개발 또는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에 따라 이종, 다종 데이터 테이블 또는 컬럼의 연계 활용을 위한 이산, 집합 등 · 자료 또는 정보의 기계 판독가능(machine readable) 형태로 변환
품질	· 분야별·업종별 데이터 테이블 및 컬럼 표준화, 품질개선(클렌징) · 데이터 활용성 향상을 위한 빈 컬럼 내 데이터 추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등 · 값 필터, 정합성 검사 및 데이터 값의 보정
코딩	· 오프라인 데이터의 DB화, 디지털화를 위한 코딩 · 통계분석 정보 생산을 위한 코딩
시각화	· 지도, 그래프, 차트, 분석 대시보드로 변환하여 시각화 처리
정보추출 또는 조합	· 이미지·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태깅, 스크리핑 · 집단화된 콘텐츠의 DB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업무 유형	내용(예시)
태깅, 라벨링	·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데이터에 태깅, 라벨링, 언라벨링
분석	· 빅데이터 분석 진행을 위한 컬럼의 이산, 집합, 시각화 · 인사이트 발굴을 위한 분석 설계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기타	· 데이터 보호 관련 기술(AI기반 재현데이터 생성 솔루션 등) 개발을 위한 가공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AI Hub) 에 등록된 데이터 재가공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데이터 가공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업무

▣ (참고) 데이터 가공 사례

- ▶ **일반가공** : 정형화된 데이터(숫자, 텍스트 등)를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설계, 분류·클렌징 등 일련의 데이터 처리 작업

원천데이터 구축 → 데이터 설계 → 데이터 분류 → 데이터 클렌징 → 빅데이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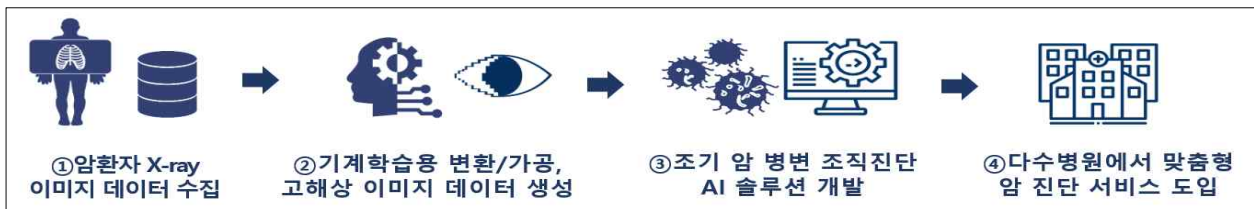
(예) 데이터(통신·교통) 가공을 통한 교통 취약지역 신규 교통서비스 출시



- ▶ **SI가공** : 정형·비정형(영상·이미지 등)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구축하여 최적의 AI모델 도출을 위해 단계별 검수와 테스트를 반복

원천데이터 구축 → 데이터 설계 → 데이터 라벨링(기계판독 및 학습 가능한 형태로 가공) 및 데이터셋 구축 → AI모델링 → 테스트 → 반복

(예) 의료데이터 기계학습 가공을 통한 맞춤형 암진단 서비스 도입



*SI가공 서비스는 ①데이터설계, ②라벨링·태깅·데이터셋 구축, ③AI모델링 도출, ④성능 및 결과 분석(테스트 데이터셋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가공서비스 모두 가능

2. 지원 규모 및 대상

○ (지원규모) 총 2,680건(데이터 구매 1,200건, 데이터 가공 1,480건) 내외

공모부문	지원부문	지원건수 (일반/사회현안)	내용	
일반/ 사회현안 해결	데이터 구매	1,200건 (1,170건/30건)	· 기업 1건당 정부지원금 최대 16백만원 지원 · 여러 건의 데이터 구매 가능(가공 혼합 불가)	
	데이터 가공	일반	480건 (465건/15건)	· 기업 1건당 정부지원금 최대 45백만원 지원 · 정부지원금의 최대 16백만원 이내 구매 혼합 가능
		AI	1,000건 (945건/55건)	· 기업 1건당 최대 70백만원 지원 · 정부지원금의 최대 16백만원 이내 구매 혼합 가능

- ※ 1.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포털(www.kdata.or.kr/datavoucher)에 지정·등록된 데이터 상품 및 가공서비스에 한하여 과제 협의 및 신청 가능
2. 구매·가공 구분 없이 수요기업 당 1건만 지원 가능하며, 일반부문과 사회현안 해결부문 간 중복신청은 불가(사회현안 부문 지원대상은 일반부문 지원 불가)
3. 데이터 구매의 경우 여러 건의 데이터 상품 구매 신청이 가능하나, 데이터 가공의 경우 여러 건의 가공서비스 신청 및 지원 불가(1개의 공급기업만 선택 및 과제 협의 가능)
4. 필요 시, 일반가공 및 AI가공부문에서는 최대 16백만원 內 데이터 구매 혼합 가능하며 구매부문에서는 가공서비스 혼합 불가

○ (지원대상)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 사회현안 해결부문에 한하여 중앙행정기관·지자체(소속기관 포함),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도 지원 가능

▣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 범위

구분	내용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및 동법 시행령 특례 요건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발행 및 확인서 상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이 가능한 기업 * 특례요건은 매출액 부분만 인정(기간에 대한 특례요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3항에 해당하는 기업*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구 분	내 용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 上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되오니, PMS 접수 시 반드시 '소상공인'으로 선택할 것 * 접수 시 최종 제출한 '기업규모'는 접수기한 마감 이후 변경 불가
예비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소속기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한 대상이 해당 * 알리오 ☞ 해당 링크 바로가기 / * 클린아이 ☞ 해당 링크 바로가기 · 민간 기업의 부설 연구소도 해당되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 해당 링크 바로가기
대학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또는 연구팀 *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및 연구팀의 구성은 단일 소속이어야 함 * 대학연구팀으로 지원할 경우 사업(연구) 수행인력 구성 시, 1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음(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중소기업확인서의 기업규모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도 청년기업*에 해당하는 수요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감면, 선정심사 시 가점 혜택 적용

* 청년기업: 본 사업의 수요기업 범위에 해당하고 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 1인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확인서의 기업규모(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를 기준으로 인정 및 지원함

○ 다년지원 대상

- 전년도('21) 사업 결과평가 상위 20% 이내의 우수 수요기업*에 대하여 신규과제 여부 무관, 구매 및 가공 소 지원부문에 대한 다년 신청 허용

* 2021년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 결과평가 상위 20% 명단(별도 첨부) 확인 필요

- 과년도('19~'21) 구매부문 既 참여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과제 여부, 전년도 결과평가 무관 가공부문으로 지원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위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등록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체납 기업 등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리규정」제31조(제제 조치)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수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신청 접수 불가)

3. 지원 요건

○ (과제 협의) 수요기업은 사업수행계획을 준비하거나, 과제협의를 및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에 대한 견적서 제출을 위해 공급기업과 과제 협의 필수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과제협의를 및 견적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구매/일반가공/AI가공 지원부문별 과제 협의를 통해 과제협의를 및 견적서 도출 필요(4. 추진방법> 기본개념 참조)

- (구매) 신청 접수 전 공급기업과 과제협의(과제협의를 및 견적서 제출 불필요) → 평가 후 선정된 수요기업에 한하여 지정된 데이터 상품 및 공급기업과 자유롭게 과제 협의 완료

- (일반가공) 신청 접수 전 데이터바우처 포털에 등록된 공급기업과 과제 협의를 진행하고, 신청 접수 시 과제협의를 및 견적서 제출

- (AI가공) 신청 접수 전 공급기업과 과제 협의(과제협의를 및 견적서 제출 불필요)를 통해 수요기업이 희망하는 공급기업 3개 선택(1~3순위) → 평가 후 선정된 수요기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상 제안된 1~3순위 공급기업과 과제 협의를 통해 과제협의를 및 견적서 제출 → 전담기관 심사를 통해 매칭 확정

- (사업비 구성)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신청 시 자사 기업 규모별* 신청 요건에 맞게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를 구성하여 신청
 -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확인서에 기재된 기업규모 기준으로 사업비 구성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접수 페이지에서 '수요기업 기본정보'에서 선택한 기업규모 (초기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기준으로 추후 변경 불가능
- (초기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 전액 현금으로 매칭
-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고,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필수 매칭
- (소상공인)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되, 전액 현물로 부담 가능하고, 필요시 현물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매칭 가능
- (청년기업) 총사업비의 10%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되, 전액 현물 부담(현금 부담 면제)
- (민간부담금 면제 대상) 일반부문의 예비창업자와 사회현안해결부문의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 현금은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직접 지급하며, 현물은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

< 데이터바우처 민간부담금 구성표 >

구 분	내 용												
초기 중견기업	<p>·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0% 이상이며, 전액 현금 부담</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width: 25%;">총사업비</td>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width: 25%;">정부지원금</td>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width: 40%;">민간부담금(현금)</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100%</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80%</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20%</td> </tr> </table>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100%		80%		20%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100%		80%		20%									
중소기업	<p>·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고, 현금 부담금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필수 매칭</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width: 25%;">총사업비</td>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width: 25%;">정부지원금</td>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td> <td colspan="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width: 40%;">민간부담금(20%)</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100%</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80%</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width: 15%;">현금 (민간부담금의 10% 이상)</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width: 25%;">+ 현물 (20% - 현금)</td> </tr> </table>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20%)		100%		80%		현금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현물 (20% - 현금)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20%)									
100%		80%		현금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현물 (20% - 현금)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소상공인</p>	<p>· 민간부담금(20%) 전액을 현물 부담 가능. 단, 기업이 원하는 경우 민간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대체 가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총사업비</td> <td rowspan="2" style="padding: 0 1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정부지원금</td> <td rowspan="2" style="padding: 0 10px;">+</td> <td colspan="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민간부담금(20%)</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100%</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80%</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현금 (대체 가능)</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현물 (20% 전액 가능)</td> </tr> </table>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20%)		100%	80%	현금 (대체 가능)	현물 (20% 전액 가능)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20%)						
100%		80%	현금 (대체 가능)		현물 (20% 전액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청년기업</p>	<p>· 민간부담금(10%) 전액을 현물 부담(현금 부담 면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총사업비</td> <td rowspan="2" style="padding: 0 1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정부지원금</td> <td rowspan="2" style="padding: 0 10px;">+</td> <td colspan="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민간부담금(현물)</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100%</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90%</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10%</td> <td colspan="2"></td> </tr> </table>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물)		100%	90%	10%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물)						
100%		90%	10%									
<p style="text-align: center;">예비창업자</p>	<p>· 민간부담금 면제 대상</p>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부처·지자체 (소속기관 포함),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p>	<p>· 사회현안해결부문 민간부담금 면제 대상</p>											

- ※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신청 시 사업비 구성 오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민간부담금 계산기(MS 오피스 엑셀 파일)’**를 PMS에서 확인한 후 수행계획 작성 및 신청 요망
- ※ 협약 후 수요기업 이행점검 시 민간부담금 중 현물(인건비) 증빙은 근로소득, 사업 소득, 기타소득만 인정(계좌이체확인증 제출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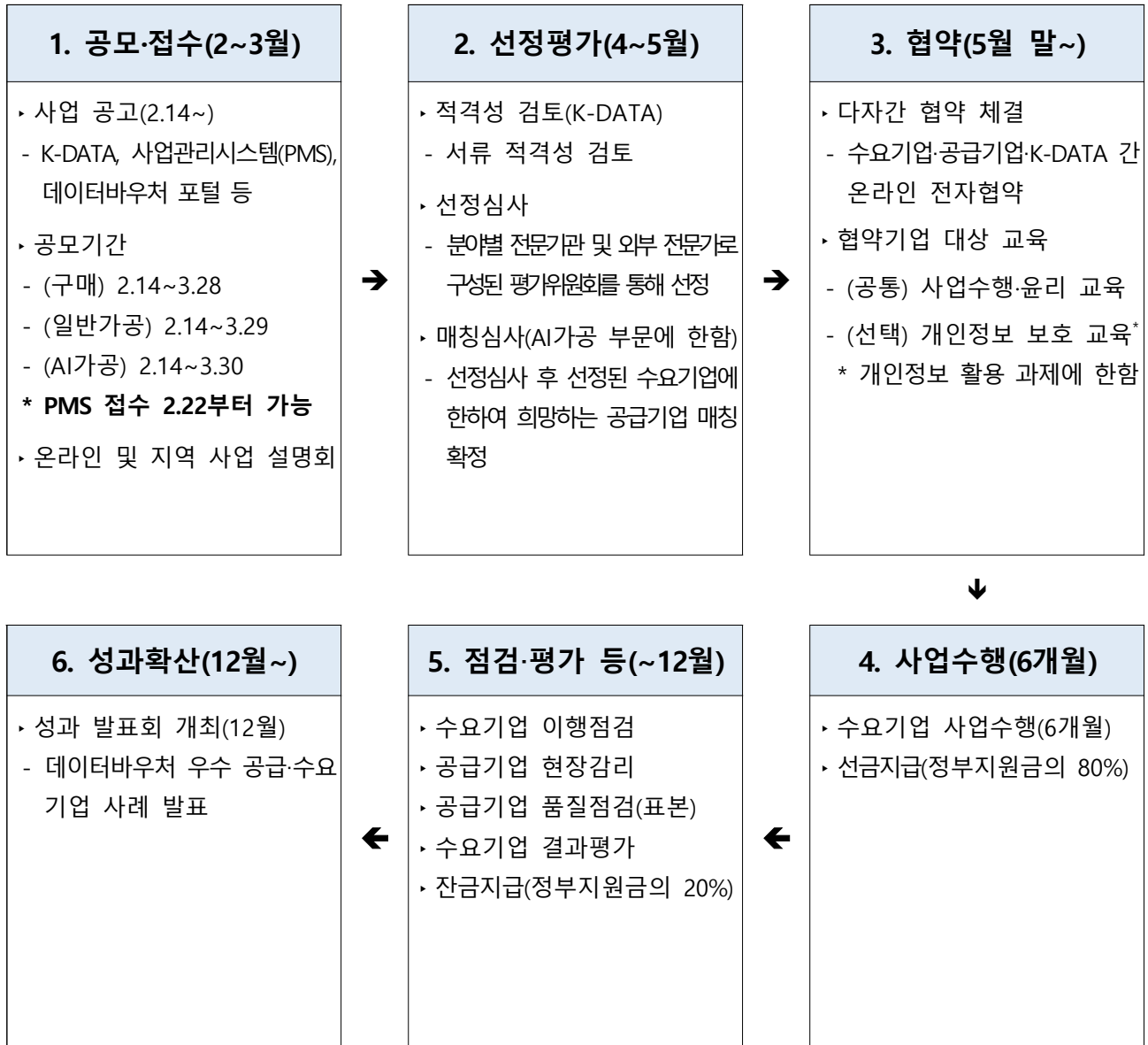
- ▣ 민간부담금 구성 예시 : 수요기업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금액이 1,640만원인 경우
- * 중소기업의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며,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인 1,600만원,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인 400만원임
이때,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 중 10%인 40만원을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하여 정부지원금 1,600만원에 민간부담금 현금 40만원을 더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금액 1,640만원 구성
 - * 청년기업의 총 사업비는 약 1,777만원이 되며,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90%인 1,600만원,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인 약 177만원임
이때, 청년기업은 민간부담금 전액 현물(참여인력의 인건비)로 부담

- (매칭 제한) 데이터 가공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균형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정 공급기업에 매칭이 쏠리지 않도록 1개 공급기업당 수요기업 매칭 상한선 제한
 - (구매) 대기업을의 경우 지원규모의 15%(180건) 이내 매칭 제한
 - ※ 단,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우 상품을 보유한 센터를 기준으로 대기업 매칭 제한 적용
 - (가공) 지원규모 각각 5%(일반 24건, AI 50건) 이내 매칭 제한
 - 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클라우드소싱을 AI가공 부문 정부 지원금의 40%이상 도입한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매칭심사 시 해당 지원부문 지원규모의 10%(100건)까지 허용
 - ※ 시장 수요에 따라 상한선 조정 필요 시, 전담기관의 운영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 우대) 신직종 일자리 창출 기여, 데이터·AI 기반의 혁신서비스 개발에 도전하는 청년기업의 경우 매칭 및 선정심사 시 가점 제공
 -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클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과 매칭하는 수요기업에 대해서는 매칭심사 시 1점 가점 제공
 - 클라우드소싱 도입 공급기업은 사업 점검 시 클라우드소싱 참여 인력 규모와 실제 참여 사실 등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증빙 제출 필수
- ▣ 클라우드소싱 데이터가공 정의 : 공급기업이 직접 일용인력 형태 또는 리워드 제공방식으로 외부자원(인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식
-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청년(사업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심사 시 1점 가점 제공
- (결과 제출) 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수요기업은 지원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내용을 사업 수행 결과물로 제시해야 함
 - ※ 본 공모의 사업 수행기간은 6개월이며, 수요기업 사업결과평가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 실시 예정(사업결과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 (예비창업자 사업자 등록)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과 관련한 내용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 필요

※ 사업자 등록을 미이행한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 실패로 간주됨

4. 추진 절차



5. 제출 서류

제출서류 목록	일반부문			사회현안 해결 부문				제출정보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중앙행 정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연구 기관	대학 연구팀	병원	
국세완납증명서	●	●	●	-	●	●	●	홈텍스 (hometax.go.kr)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	●	정부24 (gov.kr)
사업자등록증명	●	●	-	-	●	-	●	홈텍스 (hometax.go.kr)
중견기업확인서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 必)	●	-	-	-	-	-	-	중견기업 정보마당 (mme.or.kr)
중소기업확인서	-	●	-	-	-	-	-	중기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	-	-	-	-	홈텍스 (hometax.go.kr)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해당)	-	-	●	-	-	●	-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크)
고유번호증 사본	-	-	-	●	-	-	-	-
알리오 공시자료 클린아이 공시자료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해당기관의 자료만 제출)	-	-	-	-	●	-	-	알리오(www.alio.go.kr) 클린아이(www.deaneye.go.kr) RND(www.rnd.or.kr)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	-	-	-	-	●	-	대학연구팀 해당시 (해당 대학 별도 발행)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	-	-	-	-	-	●	지방자치단체 발행본
사업수행계획서	●	●	●	●	●	●	●	공모안내서 별첨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공급기업이 PMS에 업로드)	<p>* 구매 부문: 선정심사 후 선정된 수요기업에 한하여 제출</p> <p>* 일반가공 부문: 신청 접수 시 제출</p> <p>* SI가공 부문: 선정심사 후 선정된 수요기업에 한하여 제출하되, 혼합신청 시 구매부문은 신청 접수 시 제출 필요</p> <p>※ II. 공모안내> 3. 지원요건 참조</p>							공모안내서 별첨
발표자료 (10분 분량, 가공부문만 해당)	●	●	●	●	●	●	●	별도 양식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2년 2월 14일)을 포함한 이후 발행분만 인정함

※ 시스템 자동 조회 서류 : PMS 자동 검증을 통해 조회되는 서류(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 자동검증 시 컴퓨터 운영체제는 반드시 윈도우 환경 사용(MS Windows 10 이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기업규모를 사업 신청 시 PMS에서 자동 검증을 통해 조회하여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자동 검증이 불가하므로 신청 접수 전 중기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필수
- 단, 초기 중견기업, 예비창업자 및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대학연구팀은 자동 검증 미대상으로 상기 표(※ 5. 제출서류)의 해당 서류 제출 필수
-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서류 별도 제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소속기관 포함)는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 필수
- ※ 초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정보마당(한국중견기업연합회)을 통해 중견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시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사항 필수 체크) 및 제출 필요
 - 확인서 발급 검토에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발급 신청시 초기 중견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특례 대상(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한함) 여부 확인 필수
- ※ 대학연구팀의 경우 연구팀을 구성하는 **전체 참여인력 개별 재직·재학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가공부문 발표평가는 발표자료(별도양식, PPT) 제출로 대체 예정이며, 발표자료는 신청 접수 마감 전까지 PMS를 통해 업로드 필수
- ※ 제출서류 목록 중 신분증 사본, 재직·재학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 서류 발급·업로드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제출
- ※ 사업자등록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증명원 발급 시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 설정 시 2013년~2022년으로 최대 설정하여 발급
- ※ 사업수행계획서, 과제협의를, 발표자료는 반드시 PDF파일로 변환·제출

■ '22년 데이터바우처 점검 계획

구분	내용
수요기업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이행 점검 및 민간부담금 점검 ※ 지원받은 구매·가공 데이터의 사업 적용 준비, 방법, 계획 및 적용 내용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
공급기업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관데이터 감리 및 기업별 품질점검 ※ 클라우드소싱 방식의 가공서비스 제공기업은 작업 점검 시 클라우드소싱 인력 활용 현황, 비용 지출 내역(계획) 등 확인

※ **이행점검 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제의 경우**, 사업계획서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시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에 대한 사항과 개인정보 현황점검

- 점검에 불응하는 수요·공급기업의 경우 협약 해지 및 제재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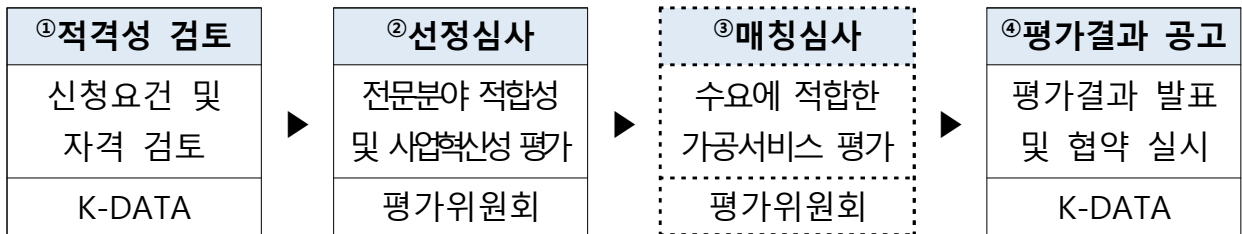
※ 부정확한 방법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한 기업의 참여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 관리 규정 제24조 및 제25조에 근거하여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에 대한 협약의무 이행점검 실시

III 선정 방안

1. 평가체계 및 절차

- (평가체계) 수요기업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적격성 검토와 선정심사를 통해 지원요건에 부합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 AI가공 부문은 수요기업 선정심사 후 매칭심사를 통해 수요에 적합한 가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기업을 별도 선정

< 데이터바우처 평가절차 >



* 매칭심사는 AI가공 부문에 한하여 별도 실시

- ① (적격성 검토) 수요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한 수요기업의 기본 요건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적격성 검토 항목 및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업 지원 자격) 기업 규모에 따른 자격 사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견·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분증 사본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고유번호증 사본 -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또는 지방 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에서 조회 가능한 대상이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 발급 대상 - 대학연구팀 : 국내 대학에 단일 소속된 연구센터 또는 연구팀 참여인력 전체 인원의 소속 재직·재학증명서 - 병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중소기업확인서(국공립 제외) ▶ (채무불이행 여부) 신청기업의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여부를 확인 ▶ (기타) 부정당사업체, 휴업 중인 기업, 참여제한 조건 해당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당사업체, 휴업 중인 기업, 세금체납 기업 확인

- ② (선정심사) 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수요기업 사업의 적합성·구체성·혁신성 등 평가
- ③ (매칭심사) 공급기업이 제출한 과제협의를, 견적서를 기반으로 수요에 적합한 가공서비스 제공 가능성 및 요구사항의 부합성, 공급거래의 적정성 등 평가(AI가공 부문에 한함)
- ④ (평가결과 공고) 평가결과는 사업관리시스템(PMS)에 고지되며, 협약과 관련한 제출서류 준비 등을 위해 향후 별도 공지

2. 선정심사 방법 및 심사기준

- (심사위원회 구성) 각 전문기관 전문분야 전문위원 1인과 데이터·경영·회계·법률전문가 4인으로 총 5인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 전문분야 전문위원은 수요기업 신청사업의 산업분야별 지정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과제 목표의 타당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활용성 및 시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심사·선정 방법) 선정 심사 점수는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 평가 점수(가점포함) 60점 이상 득점 기업에 대해 바우처 지원 가능 기업으로 분류하고, 고득점 기업에 우선하여 지원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평가는 발표자료 제출 및 서면평가로 대체 예정
 - 기후변화·질병(감염병, 난치병) 관련 사회현안 해결부문은 과제목표 타당성 평가 시 지원 합목적성, 추진 긴급성 반영

< (참고) 데이터바우처 선정심사 항목 및 기준(안) >

세부항목	심사기준
과제 목표 타당성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바우처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과의 부합성 (사회현안 해결부문 : 수요기업 지원 합목적성 및 추진의 긴급성) ○ 수요기업 사업의 독창성 및 혁신성 ○ 수요기업 사업을 위해 신청한 구매 데이터 또는 가공서비스의 역할, 적절성 및 중요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업 사업의 추진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참여 인력의 기술력, 전문적 역량 및 효율적인 활용 계획 ○ 구매·가공서비스 거래조건의 부합성 및 비용편성의 적정성
활용성 및 시장성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가치 창출 및 활용성 ○ 매출증가, 생산성 향상, 수입대체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 시장진출 계획 또는 가능성 등
지속성 및 성장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운영 및 고도화 방안 ○ 꾸준한 노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scale-up)
※ 가점항목 청년기업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업의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 수요기업 중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1점 가점 부여
※ 감점항목 개인정보 보호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 위반의 경우 감점 1점 부여 - 수요기업 중 개인정보 처리 등 개인정보 활용 과제에 한하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전담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중대한 제재처분(협약해약, 사업비 환수 등)을 받은 수요기업은 감점 1점 부여

※ 상기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매칭심사 방법 및 심사기준

- (심사위원회 구성) 데이터 전문가, 사업화 컨설팅 전문가, 회계·원가 전문가 3인의 외부전문가로 매칭심사단 구성
- 매칭심사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 모집·구성하여 운영

- (심사기준) 매칭 적합성, 사업비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심사·선정 방법) 수요기업이 매칭 선택한 공급기업을 심사하여, 매칭 심사 점수 60점 미만은 제외하고 상위 매칭순위부터 우선 선정
 - 매칭제한 및 60점 미만 득점 등으로 매칭 선택한 공급기업이 선정되지 못한 경우, 수요기업이 추가 선택한 공급기업(1개社)의 매칭 심사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매칭기업으로 선정
 - 클라우드소싱 가점은 공급기업이 제출한 견적서에 기술된 내용을 심사하여 가점 제공(평가항목 및 기준 참고)

< (참고) 데이터바우처 매칭심사 항목 및 기준(안) >

세부항목	심사기준				
매칭 적합성 (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업 사업수행 계획에 적합한 가공서비스 제공 가능성 ○ 수요기업 사업수행 계획과 가공서비스 요구사항의 부합성 				
사업비 투명성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서비스 견적서 비용편성의 적정성 ○ 가공서비스 견적서 총사업비의 타당성 				
※ 가점항목 일자리 부가가치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방안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기업의 수요기업 데이터에 대한 클라우드소싱 적용 비율 및 타당성 등에 따라 1점 부여 <p style="text-align: center;">< 배점 기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점)</td> <td>클라우드소싱 40% 이상 적용하되, 국내 인력을 활용하며, 클라우드소싱 인력에 대한 교육, 처우 등 계획이 타당한 경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없음)</td> <td>클라우드소싱 40% 미만 적용, 클라우드소싱 활용 계획이 없거나 활용계획이 부적정한 경우</td> </tr> </table> <p> ※ 클라우드소싱 적용 비율은 정부지원금 대비 가공서비스 견적서 기준 클라우드소싱으로 참여하는 작업자에 지급하는 비용의 비율을 의미 ※ (산출산식) 가공서비스 견적서를 기준으로 공급기업이 클라우드소싱으로 작업자에 지출하는 비용 × 100 ÷ 정부지원금 </p>	(1점)	클라우드소싱 40% 이상 적용하되, 국내 인력을 활용하며, 클라우드소싱 인력에 대한 교육, 처우 등 계획이 타당한 경우	(해당없음)	클라우드소싱 40% 미만 적용, 클라우드소싱 활용 계획이 없거나 활용계획이 부적정한 경우
(1점)	클라우드소싱 40% 이상 적용하되, 국내 인력을 활용하며, 클라우드소싱 인력에 대한 교육, 처우 등 계획이 타당한 경우				
(해당없음)	클라우드소싱 40% 미만 적용, 클라우드소싱 활용 계획이 없거나 활용계획이 부적정한 경우				

※ 상기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V 신청 방법

1. 신청·접수 안내

○ 공모기간

- (구매) 2022년 2월 14일(월) ~ 2022년 3월 28일(월) 18:00
- (일반가공) 2022년 2월 14일(월) ~ 2022년 3월 29일(화) 18:00
- (AI가공) 2022년 2월 14일(월) ~ 2022년 3월 30일(수) 18:00

※ 신청 접수는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2.22(화)부터 가능

※ 신청 접수 준비를 위한 PMS 회원가입, 수행계획서 등 관련 양식 다운로드, 과제 협의 등은 2.14(월)부터 가능

※ 접수 마감 시간 내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PMS)에 '최종 제출' 완료 건에 대해서만 인정 (신청서가 '임시저장'인 경우나 기타 오류 등으로 인해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PMS에서 '최종 제출' 버튼 클릭 및 제출을 완료했다라도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파일 등은 수정 및 삭제 가능(마감기한 이후 절대 수정·삭제·반환 불가)

○ 접수방법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포털 및 사업관리시스템(PMS) 접속 및 회원가입
- 데이터바우처 신청기업은 데이터바우처 포털에 지정·등록된 데이터 상품 및 가공서비스에 한해서만 신청가능하며, 데이터바우처 구매, 가공 부문별 공모안내에 따라 신청서 접수

신청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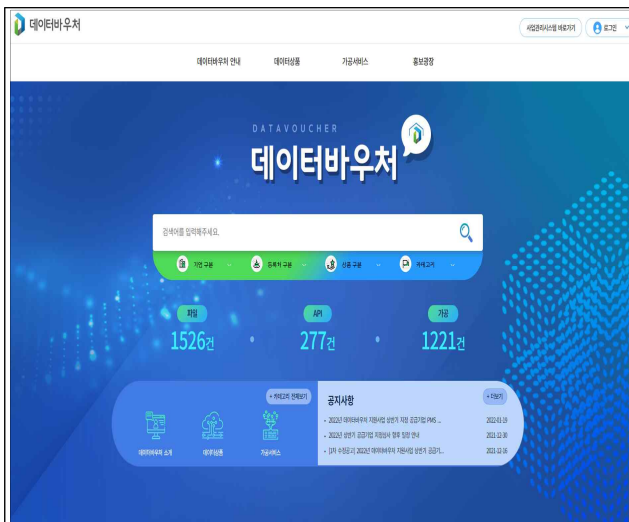
- ① 신청서 최종 제출 완료 이후, 접수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파일 등 수정 가능
- ② 접수 마감기한 이후, 어떠한 경우도 최종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파일 등은 수정·삭제·반환 불가하며 **접수 마감 이전에 반드시 수요기업의 신청상태가 '최종 제출' 상태인지 확인 필요(마감기한 이후 '임시저장' 상태는 접수 불인정)**
- ③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최종 제출 및 접수된 서류 일체 삭제·반환 불가

2. 문의처 및 관련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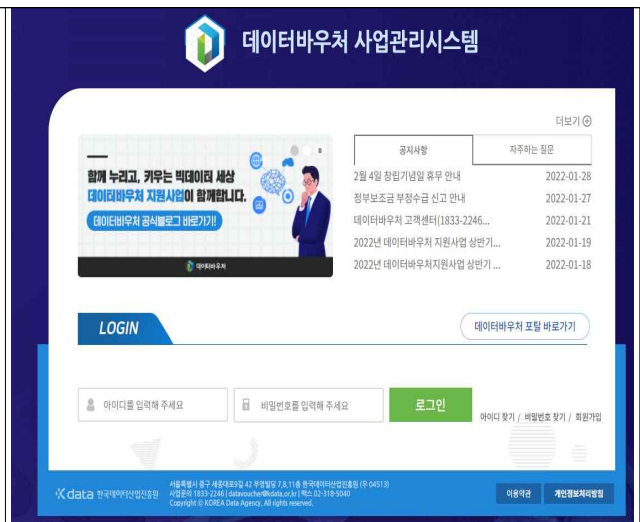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대표번호 : 1833-2246

※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선정·평가, 매칭 등으로 구분하여 상담 지원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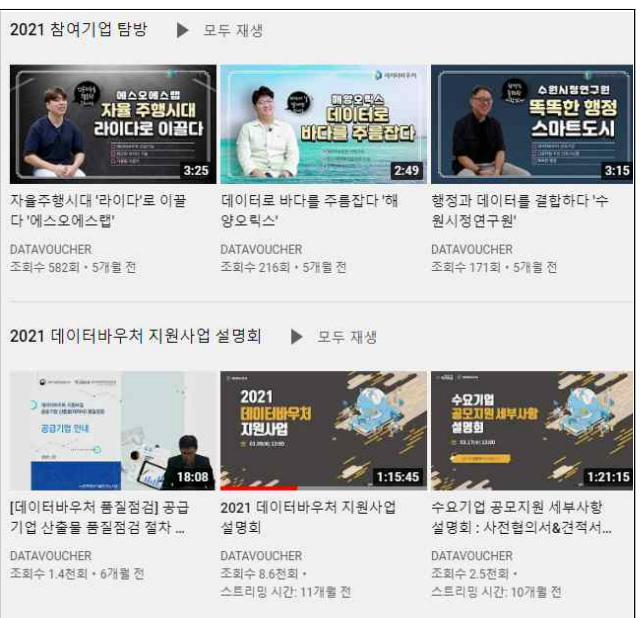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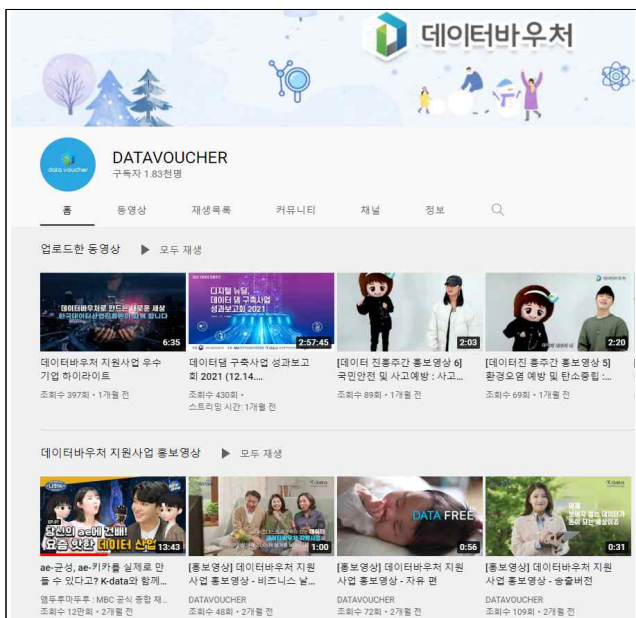
데이터바우처 포털 (바로가기)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 사업설명회, 참여기업 탐방,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영상 등 참고 가능



1. 신청조건 및 일반사항

- '22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데이터바우처 포털 및 사업관리시스템(PMS) 등 지정된 사이트에서 공모안내서를 공고
 - 따라서, 공모 절차와 조건, 점검방법 및 지원내용을 과년도(개정 전) 데이터바우처 공모와 혼동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공모 안내서 내용을 잘 숙지한 후 신청하도록 요망
- 공고 내용의 숙지가 미숙하여 제출 자료의 누락, 기재 내용의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신청내용은 최종 제출 후 접수 마감기한까지는 수정·삭제 가능하나, 접수 마감 기한 이후는 일체 수정·삭제·반환 불가
 - 특히, 신청·접수 시 제출한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기재 오류(누락)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며, 제출(업로드)한 증빙(첨부)파일에 이상이 있는 경우(파일오류 등) 그 과실은 수요기업에 있으며, 접수 마감기간 이후 제출 서류에 대한 추가 보완 절차는 절대 없음
 - 사업에 대한 공지와 단계별 결과발표 등의 안내는 PMS를 통해 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한 내 적의조치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음
- 다년지원 대상은 하기와 같음
 - 전년도('21) 사업 결과평가 상위 20% 이내의 우수 수요기업에 대하여 신규과제 여부 무관, 구매 및 가공 소 지원부문에 대한 다년 신청 허용
 - 과년도('19~'21) 구매부문 旣 참여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과제 여부, 전년도 결과평가 무관 가공부문으로 지원 신청 가능

- 수요기업이 직접 제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상 사업비 구성(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수요기업이 작성한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해당 허위 내용을 고의로 기재하였을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데이터 가공서비스' 선택 시 AI허브(<https://aihub.or.kr>)에 등록·공개된 AI학습용 데이터셋을 근원 데이터로 활용하여 재가공 할 수 있음
 - ※ 다만, 점검 시 전담기관의 기준에 따라 가공결과물의 재가공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AI허브 데이터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향후 사업비 반납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수요기업은 PMS를 통해 과제 협의를 희망하는 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해당 공급기업은 PMS를 통해 별도양식에 맞추어 견적서를 PMS 상에 입력하고 과제협의를사와 함께 등록해야 함
 - ※ 지원부문에 따라 과제협의를서 및 견적서 제출 시점이 다르며, 일반가공 부문은 신청 접수 시, 구매 부문은 선정심사 후, AI가공 부문은 선정심사 후 매칭심사 전에 제출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 마감 전 온라인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병목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으므로 조기 제출 요망
- 본 공모안내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규정」, 「데이터바우처 사업운영 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적용함

2. 평가제외 및 매칭제한

- 수요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전담기관에서 요구한 서류와 다르거나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데이터 생태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선정평가 결과 특정 공급기업에 매칭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음

- 부문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지원건 모두 실격 처리함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명시된 매칭제한 사항 외에도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 교부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함
 -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함)

3. 사업관리 및 점검

-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점검은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규정 제24조 및 제25조'에 근거하여 진행하며 세부적인 추가 점검내용은 본 공모안내서에 고지한대로 실시함
 - ※ (수요기업 점검) 현장 이행점검, 민간부담금 점검, 사업수행윤리 교육 이수증 제출, 이 외 사업관련 교육 및 기초 컨설팅 진행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공지
 - ※ (공급기업 점검) 이관데이터 현장감리 및 품질점검, 클라우드소싱 제공 기업의 경우 관련 증빙 제출(참여인력수, 비용지급 증빙 등), 가명정보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에 대한 점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감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점검 방식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점검항목 및 방법에 따라 진행함
- 수요·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배포한 양식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전담기관이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이관할 최종결과물(데이터 상품 및 가공 산출물)을 PMS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사업관리 및 점검을 위해 최종결과물을 검토 및 열람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허락해야 함

※ 최종결과물을 열람하는데 제3자의 이용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은 사전에 이를 확보해야 함

- 수요기업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거부 또는 연기하는 경우 제재 조치 할 수 있음
- 공급기업은 수요기업과 과제 협의 시 데이터 유지보수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설정하고, 수요기업은 유지보수의 무상·유상 조건을 협의 하여 과제협약서에 명시해야 함. 다만,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유지보수는 민간 자율계약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전담기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 조정 및 개입하지 않음
- 본 공모안내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규정」, 「데이터바우처 사업운영 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적용함

4. 부정수급 대응

-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모의하여 부정하게 정부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부정행위를 통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부정당사업자 등록 및 형사 고발 진행 예정
- 데이터바우처 지원금을 통한 제품 구매 대행, 불필요한 제품 끼워 팔기, 수요·공급기업 간 상호 제품 거래 등 정상적인 사업 내용이 아닌 지출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5.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 등 개인정보 활용 과제에 한함)

○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해설서,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수 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수

○ 사업수행계획서 內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해당 과제는 PMS 신청 접수 시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필수 입력 하며 선정 및 사업수행시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특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시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필수 포함·제출

○ 협약기업(수요-공급)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시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이행점검 등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이행점검, 결과평가 등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 발견 및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공개, 윤리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보고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관련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기관·기업이 과거(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전담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중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선정평가 시 감점(1점) 부과